

아동학대

Child Abuse

김춘경(Choon Kyung Kim)¹⁾이주옥(Ju Ok Lee)²⁾송영주(Young Joo Song)³⁾

ABSTRACT

During the last ten years, a number of the substantiated child abuse cases, studies, and newspaper articles in relation to child abuse have increased rapidly. Newspaper reports on physical abuse cases decreased, while articles on those of the sexual abuse and negligence increased after the year of 2000. However, the reason of child abuse was less studied, in comparison to the substantial number of research on the policy and the negative effects of child abuse. It is suggested that child abuse studies and policies should be performed from a pre-preventive perspective as well as a pro-protective perspective. The research regarding child abuse has to be conducted in the ecological perspective which includes not only the problems of children and their families, but also sociocultural issues. The results of studies on child abuse should be applied for the actual policy and systems improvement.

Key Words : 아동학대(child abuse).

I. 현 황

1.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현황(실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이후 아동학대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매해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1).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여 년간 출간된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와 2008년 아동청소년백서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2008년 사이의 아동학대 관련 주

¹⁾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²⁾ 포항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³⁾ 계명문화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oung Joo Song,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eimyung College University, Daegu 704-703, Korea
E-mail : dodukyong@kmcu.ac.kr

<표 1> 연도별 아동학대 상담신고 건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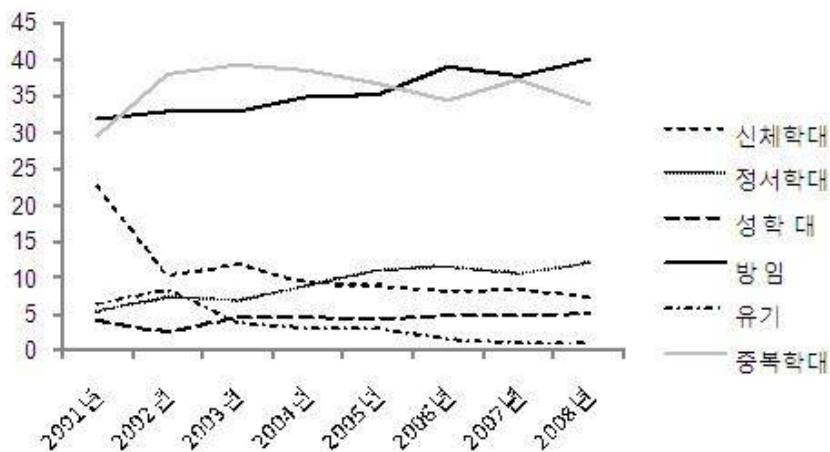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2,606 (63.1)	2,946 (71.7)	3,536 (71.0)	4,880 (69.7)	5,761 (72.0)	6,542 (72.5)	7,083 (74.7)	7,219 (75.4)
일반상담 건수	1,527 (36.9)	1,165 (28.3)	1,447 (29.0)	2,118 (30.3)	2,239 (28.0)	2,451 (27.5)	2,395 (25.3)	2,351 (24.6)
계	4,133 (100.0)	4,111 (100.0)	4,983 (100.0)	6,998 (100.0)	8,000 (100.0)	8,903 (100.0)	9,478 (100.0)	9,570 (100.0)

<표 2>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단위 :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신체학대	476(22.6)	254(10.3)	347(11.9)	364(9.4)	423(9.1)	439(8.4)	473(8.5)	422(7.6)
정서학대	114(5.4)	184(7.4)	207(7.1)	350(9.0)	512(11.1)	604(11.6)	589(10.6)	683(12.2)
성 학 대	86(4.1)	65(2.6)	134(4.6)	177(4.5)	206(4.4)	249(4.8)	266(4.8)	284(5.1)
방 임	672(31.9)	814(32.8)	965(33.0)	1,367(35.1)	1,635(35.3)	2,035(39.1)	2,107(37.7)	2,737(40.1)
유 기	134(6.4)	212(8.6)	113(3.9)	125(3.2)	147(3.2)	76(1.5)	59(1.0)	57(1.0)
중복학대	623(29.6)	949(38.3)	1,155(39.5)	1,508(38.8)	1,710(36.9)	1,799(34.6)	2,087(37.4)	1,895(34.1)
계	2,105(100)	2,478(100)	2,921(100)	3,891(100)	4,633(100)	5,202(100)	5,581(100)	5,578(100)

요 현황을 정리하였다. 2008년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9,570건으로 2001년 4,133건에 비해 약 2.3배로 증가하였다. 신고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 판정 사례 건수는 2001년에 비해 약 2.6배 증가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연도별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매년 방임과 중복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체학대와 유기는 점차 비중이 줄고, 방임과 정서학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중복학대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최근 10여 년간



<그림 1>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비율(%)

가장 많이 보고된 학대는 방임이었으며, 다음으로 신체 학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연도별 학대 유형을 비율로 산출하여 표시한 <그림 1>에 나타나있다.

연도별 학대아동의 가족유형에서는 대부분의 학대행위자가 부모(80%)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자가정과 일반가정이 다른 가족 유형에 비해 높은 아동학대 발생률을 보여주었다. 특히 모자가정보다 부자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더 많이 나타나서 아버지에 대한 특별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자가정의 경우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아동학대 발생율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어 이들에 대한 예방적 지원 역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보고된 결과(보건복지가족부, 2008)에 준하여 2008년도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8년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9,570건의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에서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33.1%, 비신고의무자가 66.9%, 아동 본인 1.0%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아동학대가 제 3자에 의해 확인되거나 신

고 되며, 아동학대의 당사자인 아동 자신이나 법적 신고의무자는 덜 보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인구 천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0.53명의 아동학대 발생률을 보여주었다. 피해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아가 50.2%, 여아가 49.8%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받은 아동은 적응 및 행동상의 문제(41.9%)를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서 및 정신건강(25.4%) 문제를 보여주었다. 또한 아동학대는 일반가정(27.2%)이나 모자가정(17.9%)보다는 부자가정 (30.2%)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한편 학대 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37.5%)보다는 남성 학대자(61.9%)가 훨씬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학부모에 해당하는 30-40 대에 가장 많은 학대 행위자가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부모(84.5%)가 학대 행위자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친부(51.2%)가 가장 많은 학대 행위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2001년 아동학대 가해자 분포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 2001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는 가족구성원이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

<표 3>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일반가정	536(25.5)	619(25.0)	696(23.8)	950(24.4)	1,173(25.3)	1,380(26.5)	1,432(25.7)	1,515(27.2)
부자가정	662(31.4)	885(35.7)	1,054(36.1)	1,285(33.0)	1,559(33.7)	1,656(31.8)	1,710(30.6)	1,687(30.2)
모자가정	217(10.3)	299(12.1)	380(13.0)	502(12.9)	659(14.2)	799(15.4)	907(16.3)	999(17.9)
미혼부모 가정	10(0.5)	30(1.2)	35(13.0)	70(1.8)	85(1.8)	109(2.1)	78(1.4)	97(1.7)
재혼가정	238(11.3)	228(9.2)	246(8.4)	322(8.3)	317(6.8)	389(7.5)	390(7.0)	395(7.1)
친인척 보호	187(8.9)	142(5.7)	217(7.4)	235(6.0)	283(6.1)	284(5.5)	353(6.3)	358(6.4)
동 거	60(2.9)	94(3.8)	122(4.2)	200(5.2)	227(4.9)	242(4.6)	215(3.8)	198(3.6)
가정위탁	3(0.1)	5(0.2)	8(0.3)	20(0.5)	29(0.6)	14(0.3)	26(0.5)	26(0.5)
입양가정	13(0.6)	5(0.2)	13(0.4)	13(0.3)	17(0.4)	26(0.5)	19(0.3)	25(0.4)
시설보호	-	10(0.4)	57(2.0)	90(2.3)	88(1.9)	102(2.0)	254(4.6)	104(1.9)
소년소녀 가정	15(0.7)	14(0.6)	21(0.7)	9(0.2)	26(0.6)	49(0.9)	28(0.5)	35(0.6)
파악안됨	139(6.6)	107(4.3)	43(1.5)	119(3.1)	78(1.7)	92(1.8)	92(1.6)	37(0.7)
기 타	25(1.2)	40(1.6)	29(1.0)	76(2.0)	92(2.0)	60(1.1)	77(1.4)	102(1.8)
계	2,105(100)	2,478(100)	2,9(100)	3,891(100)	4,633(100)	5,02(100)	5,581(100)	5,578(100)

<표 4> 연도별 아동학대 관련 논문 수

(단위 : %)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09	계
학위 논문	7(63.6)	19(47.5)	58(54.2)	207(75)	111(73.5)	402(68.7)
학술지 논문	4(36.4)	21(52.5)	49(45.8)	69(25)	40(26.5)	183(31.3)
전 체	11(100)	40(100)	107(100)	276(100)	151(100)	585(100)

우, 아버지(13.1%)보다는 어머니(85.6%)가 훨씬 많았다. 이 밖에 학대 행위자의 실직(23.3%)이나 경제적 어려움(단순노무직이 12.4%, 기초생활수급권자가 28.7%)이 아동학대 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학대 행위자 중 비수급권자도 59.4%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적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아동학대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이유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고립 (24.6%), 중독 및 질환(12.7%) 보다는 양육태도 및 방법의 부족(30.2%)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가 반드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아동 양육 및 자녀 교육의 한 방편으로 아동학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의 50.2%가 거의 매일, 11.3%가 2-3일에 한번 나타남을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가 보호자의 우발적 실수나 일회적 사건이 아니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70.6%)이 원가정 보호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일시 보호, 교육 및 상담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심리치료와 가족 기능서비스는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역시 심리치료와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는 가장 적었으며, 대부분 개별상담과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횟수 역시 20.8%에 불과하여 충분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인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실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체계 확립,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치료센터(예정)와 아동학대예방센터(해바라기 아동상담센터), 지역별 가정폭력 상담소 등이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세이브 더 칠드런,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등의 조직 역시 아동학대 관련 사업에 참여 하고 있다.

2. 아동학대 연구 현황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에 관한 정보사이트인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 : //www.riss4u.net](http://www.riss4u.net)를 이용하였다. 이 사이트는 교육과학기술부 출연기관인 한국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학위논문과 국내의 학술지 논문, 단행본을 검색할 수 있다. 아동학대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1986년부터 2009년까지 아동 학대를 주제로 하여 쓴 연구논문은 학위논문 402편과 학술지 논문 183편 등, 총585편이었다.

<표 5> 아동학대 연구 논문의 주제 분류

(단위 : %)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5-2009	전체
개념/인식	0(0)	3(6.1)	6(4.2)	8(2.2)	1(0.5)	18(2.5)
학대유형	1(7.1)	7(14.2)	24(17.1)	52(14.8)	22(11.8)	106(14.3)
실태연구	1(7.1)	4(8.1)	10(7.1)	20(5.7)	4(2.1)	39(5.2)
학대원인	5(35.7)	16(32.6)	27(19.2)	49(14)	23(12.4)	120(16.2)
학대영향	2(14.2)	8(16.3)	32(22.8)	73(20.8)	52(28.1)	167(22.6)
치료방법	2(14.2)	1(2)	8(5.7)	37(10.5)	25(13.5)	73(9.8)
대책방안	3(21.4)	7(14.2)	30(21.4)	99(28.2)	53(28.6)	192(26.0)
평가/동향	0(0)	2(4)	2(1.4)	7(2)	5(2.7)	16(2.1)
기 타	0(0)	1(2)	1(0.7)	5(1.4)	0(0)	7(0.9)
합	14(100)	49(100)	140(100)	350(100)	185(100)	738*(100)

주. 중복 분류의 경우가 있어, 실제 논문의 수와는 일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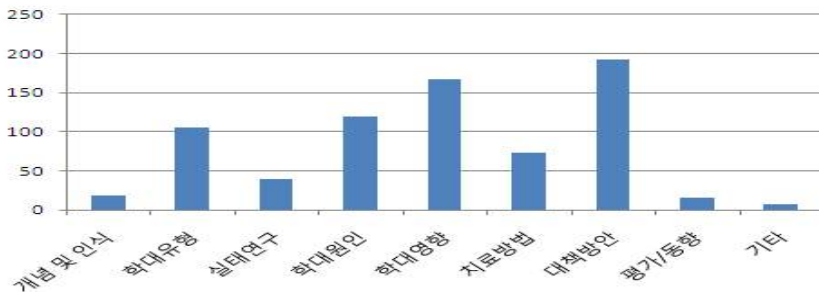
전체 논문 수는 매년 증가하였고, 특히 2001년도에 들어서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이 시기에는 아동복지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립되고 신고전화 가 일반인에 소개되어 국민적 의식 변화가 진행되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아동학대의 체계적 접근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아동학대 관련 연구의 양적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관련 연구논문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구 주제 빈도에서는 대책방안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대 영향, 원인, 치료 방법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 이후 치료 방법과 대책 방안에 대한 논문의 편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치료 전문가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나 기관에서는 종합적인 대책방안에 힘을 쏟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아동학대의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 이전의 논문은 성학대를 다루는 논문이 가장 많았으나, 2000년 이후에는 성 학대 뿐 아니라 언어 및 정서 학대를 다루는 논문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실제 발생하는 아동학대 유형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방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숙진 · 신혜령 · 이은주, 2006).

연구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아동학대 요인을



<그림 2> 아동학대 연구 논문의 주제 분류

<표 6> 연도별 아동학대 관련 논문의 학대 유형

(단위 : %)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5-2009	전체
신체학대	0(0)	2(25)	4(16.6)	12(23)	3(13.6)	21(19.6)
성 학 대	1(100)	3(37.5)	8(33.3)	10(19.2)	6(27.2)	28(26.2)
정서학대	0(0)	2(25)	4(16.6)	13(25)	5(22.7)	24(22.4)
방 입	0(0)	1(12.5)	2(8.3)	8(15.3)	4(18.1)	15(14.0)
기 타	0(0)	0(0)	6(25)	9(17.3)	4(18.1)	19(17.8)
계	1(100)	8(100)	24(100)	52(100)	22(100)	107(100)

분류해 본 결과 전체 논문 중 부모 및 아동 양육자 요인(21.4%)과 가족 요인(22.1%) 혹은 사회문화적 요인(11.5%)을 주로 다루고 있어, 55%의 논문이 학대받은 아동을 둘러싼 체계를 주로 연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학대 대상인 아동 자신(6.9%)을 학대 요인과 관련지어 연구한 경우는 매우 적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관련 학위논문을 전공별로 분류한 결과, 전체 402편의 학위 논문 중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학과가 205편(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아동학과에서 51편(12.69%)을 발표하였으며, 행정 및 정책학과(38편, 9.45%), 심리학과 및 상담학과, 재활과학과 및 치료학과 순으로 이어졌다.

3. 아동학대 관련 기사 현황

본 연구는 1990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19년 6개월 동안 일간신문인 C일보에 나타난 아동학대 관련 기사 총 184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는 연도별로 아동학대를 다루고 있는 기사 수의 양적 변화와 관련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학대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표 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일보에 실린 아동학대 관련 기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관련 기사는 사회면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아동학대예방센터(현 아동보호전문기관)가 설립되면서 아동학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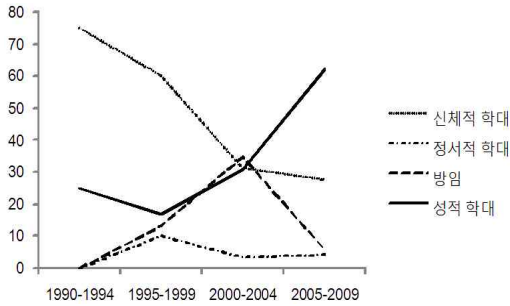
<표 7> 연도별 학대 관련 기사수의 변화

	1990-1994년	1995-1999년	2000-2004년	2005-2009년	계
전체 기사 수	14	38	48	84	184
합계	52	132			

<표 8> 연도별 아동학대 관련 기사의 유형

(단위 : %)

	1990-1994년	1995-1999년	2000-2004년	2005-2009년	계
신체적 학대	6(75.0)	18(60.0)	9(31.0)	19(27.5)	52(38.2)
정서적 학대	0	3(10.0)	1(3.4)	3(4.3)	7(5.1)
방 입	0	4(13.3)	10(34.5)	4(5.8)	18(13.2)
성 학대	2(25.0)	5(16.7)	9(31.0)	43(62.3)	59(43.4)
계	8(100.0)	30(100.0)	29(100.0)	69(100.0)	136(100.0)



<그림 3> 연도별 아동학대 관련 기사의 유형(%)

이 체계적으로 수집되기 시작한 2000년을 전후로 상당한 관련 기사 수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았다. <표 8>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는 아동학대 관련 기사의 대부분이 신체적 학대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신체적 학대를 기사화하는 비율이 줄고 방임이나 성 학대에 관한 기사가 점점 늘어남을 보여주었다. 특히 2005년 이후 아동학대 관련 기사의 대부분(62.3%)은 성적 학대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II. 연구쟁점

아동학대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 연구동향 분석, 아동학대 관련 신문기사 분석, 아동학대서비스 기관 실무자 인터뷰 등을 기초로 살펴본 아동학대 관련 연구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86년 이후 아동학대 관련 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연구 주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대책 방안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아동학대 관련 연구의 상당 부분(51%)이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 전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동학의 경우 아동학대의 원인이나 아동학대로 인한 영향, 아동학대 관련자를 위한 심리치료 등이 학문특성상 적합한 연구주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므로 아동학 전공자들이 더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동학대의 영역에서 이론적 접근 뿐 아니라 실제적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추후에는 아동학 전공자들이 사회복지나 행정 및 법규 전공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동학대 관련 연구 현황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성 학대 및 정서, 신체 학대 등을 다루고 있으며, 방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이후 2008년까지의 아동학대 실태조사에서 아동방임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또한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양육 및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여 아동방임의 가능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에서는 아동방임에 관한 연구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는 방임과 관련된 아동학대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이 낮은 이유로 아동학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절한 표준화된 학대판정척도개발에 대한 요구가 크다. 물론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국민 전체의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학대 자체를 판정하는 업무 자체가 매우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결정이기에 학대판정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전문가 훈련 매뉴얼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잠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도 개발되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넷째, 아동학대의 복합적 성격을 고려할 때,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구조화된 질문지 방법 위주의 양적 조사뿐 아니라 인터뷰를 통한 면접법이나 임상 사례연구연구코찰연구 등의 질적 연구도 연구목적에 맞게 다양하고 통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도 학대당한 아동이나 청소년, 피의자의 부모나 가족, 학교나 시설, 국가 등의 사회집단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대 유형에 관계없이 유·아동기의 학대경험에 따라 청소년기에 비행청소년이 될 위험성이 높고, 이는 또 다시 병리적 문제를 가진 학대부모가 될 가능성을 높여 학대 대물림의 악순환을 예고한다는 연구결과(김혜경·석말숙, 2003)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국에서는 아동발달과 관련하여 태아기부터 신생아기·아동기·청소년기·성인기 등 구체적인 발달시기별로 학대의 영향을 예측, 관찰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대를 아동의 발달단계에서 발견하고, 추후 발달 성향을 예측할 수 있는 종단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아동학대 원인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아동학대 가해자나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아동학대를 개인의 문제로 파악하지 않고 사회구조적 문제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동학대를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 관계 혹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적 의미로 해석하는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은 아동학대의 대상인 아동 자신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게 이루어져서

아동학대를 상호작용적 체계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를 관련 하위체계들의 상호교류적 의미로 접근하는 것은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는 아동 자신을 포함한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대책으로 실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대아동을 위한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예방, 신속한 위기개입, 치료의 균형적 발전이 중요한 만큼, 각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명숙, 2002).

III 실제적, 정책적 이슈

아동학대 정책은 치료적 차원에서의 접근 못지않게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 예방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 책임 의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아동과 그 가족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사회구성 단위이지만 동시에 아동을 포함하는 각 개별 가족 간의 경계 허물기가 동시에 필요하다. 이것은 사회구성원들이 양육 책무감을 공유하고 사회적 감시망을 발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웃은 학대나 성범죄의 가해자일 수도 있다. 실제로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 추행’은 가해자의 집(13.1%) 혹은 길거리(16.6%)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008년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아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범죄 수준이 심각할수록 더욱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 학대 및 성 범죄의 단일 집단 가해자 중 동네 사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보호,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이웃은 아동학대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동보호를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안전한 학교 및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방과 후 아동을 위한 적극적 보호 프로그램 운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상징하는 노란 리본 스티커를 컴퓨터, 문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Yellow Sticker Campaign)’을 벌이고 있다.

둘째, 아동학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예방교육이나 예방사업을 대상별로 다양하게 실시해야 한다(윤혜미, 2003; 정운수·이정희, 2003). 아동학대 예방 서비스는 예방 목적, 주요 교육대상, 서비스 전달시기에 따라 각기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1차 예방 사업은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가정과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를 지원하고 일반인들의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달적 특성상 아동학대 가해자 및 아동학대 상황에 매우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아동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43.5%가 아동에 대한 특별한 유인 제공이나 강제력 동원 없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또한 2008년도 아동학대 현황보고에 의하면 아동 자신의 아동학대 신고

비율은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 피해아동의 과반수가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기 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학대예방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히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학대아동의 발견, 대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의무화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와 폭력을 자녀교육의 방편으로 정당화하기 않도록 부모와 교사를 비롯한 사회의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체벌이나 엄격한 훈육이 자녀양육의 방안으로 승인되는 문화적 특성을 유지해왔다. 가정 폭력의 가장 많은 이유로 가해자는 ‘자녀교육상 문제(33.8%)나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42.8%, 2000년 기준)’라고 답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2008년에도 성 학대를 제외한 모든 학대에서 부모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80%) 아동학대를 양육방식으로 채택하는 경향이 여전히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1차적 예방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지만, 1차 예방교육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2차·3차 예방사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2차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이 많은 고위험집단을 조기 발견하고 아동학대로의 발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아동학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비록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재정이나 전문 인력 부족으로 2차 예방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나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체계화시켜 2차 예방프로그램도 실행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차 예방사업으로는 아동학대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재발이나 가족해체를 막기 위한 서비스 제공이 있다. 이 또한 시행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으나,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한 가족기능

의 회복과 강화라는 측면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위기개입으로 피학대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전문상담원이 피학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격리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할 경우에도, 학대행위자가 학대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상담원 등과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특별한 법적 장치가 없다. 아동복지법 제 27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18조 2항, 3항, 4항에 응급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격리하여 3일 이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보호자 설득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장에서 아동을 강제 격리할 경우 학대행위자와 몸싸움이 벌어질 위험성이 있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인권 문제 및 가정사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개입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일 뿐 아니라 요구되는 서비스도 다양하므로 어느 한 기관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될 수 없기에 관련 기관들 간의 업무상 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협조체계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넷째, 아동학대 치료서비스는 피학대 아동과 가해자인 부모와 가족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은 학대의 경험이 즉각적인 상처와 스트레스, 그리고 충격을 남길 뿐 아니라, 아동으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부적절한 대처방식을 학습하게 하고, 그 후유증이 평생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에 학대아동에 대한 치료가 위기 개입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개인 심리치료와 집단치료 및 가족치료 등을

통하여 아동의 심리 정서적 상처를 회복시키고 잠재적인 아동학대의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일반 학대 아동 대상의 서비스와 고위험군 아동 대상의 서비스를 구분하여 다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아동 학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동방임의 경우, 신체적 학대나 성 학대와는 다른 유형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부모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학대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해자 치료명령제도의 도입이 시급하고, 이들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의 개발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동학대는 복합적 성격을 띠 뿐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도 의료적, 사법적, 교육적, 행정적, 사회 복지적, 그리고 민간자원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신고, 조사, 치료 과정에서 상이한 특성을 가진 다양한 영역의 기관과 전문가 집단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아동학대서비스에는 경찰, 의료기관, 아동복지기관 등 여러 기관이 관여하게 되는데, 만약 관련기관 사이의 상호이해 및 연계성이 부족할 경우 개입에 대한 책임전가 및 책임회피로 인해 피학대아동을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함으로써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각각의 집단이나 조직들은 시간, 비용, 에너지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효과적인 연계 업무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기관들이 상호 신뢰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관 사이의 역할의 융통성, 업무의 협조성, 자원의 공유, 발생하는 혜택의 정당한 배분 등이 이루어

어져야 한다(박명숙, 2002). 연합 체계와 제도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제도가 잘 구축된다고 해도 효과적인 실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들이 자신의 업무를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교육 및 훈련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실행시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이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가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제로 드러난 아동학대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해석도 많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넣는 등의 법률적 제재가 요구된다. 또한 학대행위자에 의해 받게 되는 업무방해와 협박 등의 위협으로부터 아동학대전문상담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보상 받을 법적 장치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정미경, 2008). 실천현장에서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전혀 없이 활동해야 하는 아동학대 전문상담원들의 신분상의 문제도 효과적인 연계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라는 점에서 아동학대자의 경우 일정기간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규정함으로써 피해아동을 가해부모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학대행위자를 강제로 상담 및 치료에 참여시킬 수 있는 법적 의무조항이 없고, 이들을 사후 관리하는 것이 매우 힘든 실정이다. 실제로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률은 매우 높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아동학대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낮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재교육이나 상담의 법적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아동학대 문제는 소극적 의미의 위기 개입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학대아동의 권리보호와 행복권 추구의 적극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아동중심의 아동권리 측면에서 그리고 아동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초점을 두고 시행되어야 한다(김중세, 2008). 국제사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니세프는 국제 전략으로 ‘아동에게 다정한 도시(Child Friendly City)’를 제창하고,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문서에서도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을 제창하고 있다. 아동학대 문제도 아동의 행복추구라는 적극적 의미의 아동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법조항의 검토도 아동인권법 등과 같이 적극적이면서 포괄적인 아동인권보호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동학대는 학대받는 아동이나 학대행위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는 사회구조, 경제적 문제, 양육관련 문화적 관점과 태도 등과 관련되며,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학대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공황, 실직, 가족 와해 등 최근 우리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향후 몇 년간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아동학대를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반드시 미리 마련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는 이론과 학문적 탐색의 문제

이기도 하지만 역시 실천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는 전문가 연구를 통한 많은 이론적 토양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이러한 내용들이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책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여 구성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학대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성하는 행정가나 입법가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와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아동학대 전문가와 교육자가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 자신과 부모들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구성하고 실행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분야에서야말로 이론과 현장실무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교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종세(2008). 아동인권과 아동학대-아동인권 수준 제고방안. 법학연구, 31, 47-76.

- 김혜경·석말숙(2003). 아동기 학대적 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6, 71-97.
- 박명숙(2002). 아동학대서비스에서 관련 기관들 간의 연계성에 관한논의. 한국아동복지학, 13, 27-52.
- 보건복지부(2001).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 보건복지가족부(2008). 아동청소년 백서.
- 보건복지가족부(2008).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윤혜미(2003).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센터 활동분석과 아동보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논의. 한국아동복지학, 12, 7-38.
- 이숙진·신혜령·이은주(2006). 아동학대 실태조사 : 방임아동을 중심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국가인권위원회 용역 보고서).
- 정미경(200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정윤수·이정희(2003).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2(3), 227-263.
- 조선일보(1990. 1. 1.-2009. 6. 30) 아동학대 관련 기사.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 : // www.riss4u.net](http://www.riss4u.net).

2009년 8월 22일 투고, 2009년 11월 4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